

II. 약 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시행 2025. 7. 1][2025. 2. 28. 일부개정]

2007년 8월 27일 제정
2007년 10월 10일 개정
2008년 1월 9일 개정
2008년 2월 28일 개정
2008년 5월 19일 개정
2008년 12월 15일 개정
2010년 3월 2일 개정
2010년 9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0년 12월 27일 개정
2011년 2월 16일 개정
2011년 6월 23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5년 4월 1일 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6년 12월 19일 개정
2017년 7월 25일 개정
2017년 12월 12일 개정
2018년 7월 23일 개정
2020년 11월 3일 개정
2021년 6월 29일 개정
2023년 9월 26일 개정
2024년 5월 9일 개정
2024년 10월 1일 개정
2025년 2월 28일 개정

이 약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내지 제121조에 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 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승낙으로 체결되며 공제계약의 체결로써 공제에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은 “계약”, 공제 계약자는 “계약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라 합니다)

②계약의 청약을 하려면 부금월액을 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청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부금으로 충당됩니다.

③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개정 2008.5.19.>

④중앙회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중앙회가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

②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돌려드리며,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2. 부금

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라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08.5.19.>

3. 부금월액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4. 삭 제 <2008.5.19.>

4. 부금납부월수

부금의 납부를 마친 월수를 말합니다. 다만, 미리 납부한 부금의 월수를 제외합니다. <개정 2007.10.10., 2008.12.15.><호변변경 2008.5.19.>

5. 부가공제기준일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을 말합니다. <호변변경 2008.5.19.>

6. 부금납부기일

계약자가 부금을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개정 2008.5.19.><호변변경 2008.5.19.>

7. 공제금

제1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08.5.19.><호변변경 2008.5.19.>

8. “해약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호변변경 2008.5.19.>

9. “공제계약대출”이라 함은 중앙회가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호변변경 2008.5.19.>

제4조(공제가입대상) ①공제에 가입하려면 가입 당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 2016.12.19.(2017.1.1.시행)>

1.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개정 2008.5.19., 2010.3.2.>
2.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상법」상의 회사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합니다)의 대표자를 말하며, 그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공제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공제가입대상)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부금의 납부를 24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8.5.19., 2021.6.29., 2025.2.28.><호변변경 2008.12.15.>
2. 삭 제 <2008.12.15.>
3. 삭 제 <2017.7.25>
2.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개정 2010.12.10., 2024.5.9.>[항변변경 2017.7.25.]
 - 나. 무도장 운영업(91291) <개정 2024.5.9.>
 -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개정 2024.5.9.>
 - 라. 카지노 운영업(91242) <신설 2024.10.1.>
 - 마. 유사 의료업(86902) 중 시각장애인인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24.5.9., 2025.2.28.><목변변경 2024.10.1.>

<호변변경 2008.12.15., 2017.7.25>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중앙회는 공제계약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의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인터넷(앱)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부금납입, 납입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공

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08.5.19., 2020.11.3>

②중앙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5.19., 2020.11.3>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돌려 드리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보아 해지하며, 중앙회는 납부한 부금을 반환합니다. 단, 중앙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지 않은 경우 부금을 납입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 청약일 당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2. 계약 청약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3. 계약 청약일 당시 제5조의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신설 2017.7.25.>

제8조(계약해지) ①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중앙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24개월 이상 미납한 때 <개정 2008.5.19., 2021.6.29., 2025.2.28.>
2.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 ③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간주해약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제17조(공제사유)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때 <개정 2008.5.19.>

[조변변경 2017.7.25.]

제8조2(부금 장기미납자의 정상계약 전환) ①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한 자(이하 “부금 장기미납자”)는 “정상계약 전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부금 1회분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을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8>

② 삭 제 <2025.2.28>

③정상계약으로 전환 시,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합니다.

④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정상계약전환을 신청할 때에 부금월액을 새로이 정할 수 있고, 기존의 부금월액보다 감액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본조신설 2021.6.29.]

제2관 공제부금의 납부(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부금월액) 부금월액은 최저 50,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로 하되, 10,000원 단위로 합니다. <개정 2014.3.1.>[조변변경 2017.7.25.]

제10조(부금의 납부) ①계약자는 부금월액 또는 매 분기의 부금액을 매 부금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부금납부기일로 합니다. <개정 2008.5.19.>

②부금월액(부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부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08.5.19.>

③계약자는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5.19.>[조변변경

2017.7.25.]

제11조(부금월액의 변경) ①계약자가 부금월액의 증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가 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한 후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2.28., 2008.5.19., 2010.3.2., 2013.9.16.>[조변변경 2017.7.25.]

제12조(부금납부의 중지) 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부금납부의 중지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4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08.12.15., 2018.7.23., 2021.6.29.>

1. 재해 : 6개월 <개정 2008.12.15.>
2. 입원치료 : 6개월 <개정 2008.12.15.>
3. 경영악화 : 6개월 <신설 2018.7.23.>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 1년 <신설 2008.12.15.>[호변변경 2018.7.23.]
5. 휴업 : 1년<신설 2017.7.25.>[호변변경 2018.7.23.]
6. 사회재난 : 6개월<신설 2024.10.1.>
7. 출산 : 1년<신설 2024.10.1.>

[제목개정 2008.12.15.][조변변경 2017.7.25.]

제13조(부금의 통산) ① 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전(前)계약의 부금을 후(後)계약의 부금으로 통산합니다. 이 경우 전 계약은 소멸합니다. <개정 2008.5.19.,

2016.12.19.(2017.1.1.시행)>

1. 제8조(계약해지)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간주해약사유 <개정 2008.5.19., 2018.7.23.>

2.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 <개정 2008.5.19.>

②제1항의 부금의 통산신청과 동시에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공제 가입대상)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5.19., 2010.3.2.>

③제1항에 의한 부금통산 신청시 전 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부금의 납부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미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관련 법을 따릅니다. <신설 2013.9.16.,2021.6.29>

④전 계약의 사후부금은 제16조(사후부금의 반환)에 불구하고 후 계약의 부금으로 통산합니다. <신설 2013.9.16.>

[제목개정 2008.5.19.][조변변경 2017.7.25.]

제14조(부금선납) ①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08.12.15.>

② 삭 제 <2008.1.9.>

②제1항의 선납부금 중 제8조제3항 또는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잔여 부금의 반환은 제16조 사후부금의 반환규정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신설 2013.9.16.><개정 2018.7.23.>

[조변변경 2017.7.25.]

제14조 삭 제 <2008.5.19.>

제15조(부금미납의 통지) 중앙회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을 미납한 경우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장기 미납 등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2015.1.1.,2021.6.29>

[본조신설 2008.5.19.][조변변경 2017.7.25.]

제15조 삭 제 <2015.4.1.>

제16조(사후부금의 반환)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8조(계약해지)제3항 각 호의 간주 계약사유 또는 제1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 하여 드립니다. <개정 2008.5.19.>

[제목개정 2008.5.19.]

제3편 공제금의 지급(중앙회의 주된 의무)

제17조(공제사유) ①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제5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중간정산 요청 시 차기 수납 예정 부금과 장려금 등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을 지급 하며, 중간정산 이후에도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개정 2024.5.9., 2024.10.1.>

1. 폐업(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다만, 제8조(계약해지)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 ②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08.5.19.>

제18조(공제금) ①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개정 2008.5.19.>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공제금 지급기준표”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동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표 제1란의 「부금 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5.19., 2024.5.9.>
2. 부가공제기준일에 제1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 “가정공제금”이라 합니다)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008.5.19.>

① 삭 제 <2008.5.19.>

②제1항제2호의 부가지급률은 매년마다 “가정공제금”의 총액,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예상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중앙회가 정하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08.5.19.>

제19조(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 ①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제17조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개정 2008.5.19., 2024.5.9.>

②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하여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결격) ①고의의 범죄행위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의 사망 전에 그 사망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게 한 자 또한 같습니다.

②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가 제1항의 범죄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공제금 등의 반환) 중앙회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공제금 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공제금 등의 상계)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금 및 (삭제) 기타 일체의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해약환급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5.19., 2017.7.25>

제23조(사망의 인정) 제17조제1항제2호(사망)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개정 2008.5.19.>

제24조(해약환급금) ①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 제8조(계약해지)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금 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별표3>“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5.19.>

2. 제8조(계약해지)제2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80% <개정 2008.5.19.>

3. 제8조(계약해지)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간주해약환급금 <개정 2008.5.19.>

③제2항제3호의 간주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개정 2008.5.19.>

1.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별표2>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5.19.>
2. 부가공제기준일(제1회차부터 제3회차까지의 부가공제기준일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제8조(계약해지)제3항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가정간주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8조(공제금)제2항에 따른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008.5.19.>

제4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기준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이 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 이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하“기준이율”이라고 합니다)은 중앙회가 정합니다.

②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매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기준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 기간 중에도 기준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12.15.>

③기준이율의 최저한도(이하“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합니다)는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의 기재에 따릅니다.

④중앙회는 기준이율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26조(공제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계약자에게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는 제8조(계약해지)제3항 각 호의 간주해약사유 또는 제1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5.19.>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중앙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지급금·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이하“수급권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08.1.9.>

②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중앙회가 수급권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앙회양식)
2. 공제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질병·부상진단서, 퇴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증명서, 제적등본 등) <개정 2008.5.19., 2010.9.30.>
3. 삭 제 <2013.9.16.>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항변변경 2017.7.25.]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항변변경 2017.7.25.]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제2호의 사망진단서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중앙회는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공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중앙회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수급권자는 제2항의 공제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중앙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1.6.23.>

⑤중앙회가 공제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공제금의 분할지급)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개정 2008.5.19.>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후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개정 2017.7.25.>
2. 계약자에게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개정 2008.5.19.>

②계약자가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항의 청구는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이하“분할지급대상액”이라 합니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③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매월, 분기, 반기 또는 년에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합니다. <개정 2013.9.16., 2017.7.25.>

④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이하 “분할지급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 후 최초의 분할지급월로부터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으로 합니다. <개정 2013.9.16., 2017.7.25>

⑤분할공제금은 공제금(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대상액)을 분할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하며,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제1항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금 전액에서 분할지급대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2조(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①중앙회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계약자가 (삭제) 잔여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계약자

<개정 2008.12.15., 2017.7.25>

②제1항의 잔여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중앙회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사업자·보험회사·금융회사 및 공제·보험·금융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2011.6.23.>

1.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부금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계약자의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제5관 공제계약대출

제34조(대출운용원칙)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합니다.

제35조(대출자격)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7.25.,2021.6.29>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6조(대출종류) 공제계약대출의 종류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일반대출, 질병 등 원인에 의한 의료대출, 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대출,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대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대출 등이 있으며, 계약자는 중앙회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설 2020.11.3><개정 2023.9.26.>

제37조(대출한도) ①공제계약대출의 대출총한도는 대출신청일에 계약이 제8조(계약해지)제2항제1호의 사유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4조(해약환급금)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제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다만, 대출총한도는 계약자가 납부한 부

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08.12.15., 2015.4.1., 2020.11.3.>

②종류별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대출총한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신설 2020.11.3.>

③공제계약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개정 2010.12.10.>[항변변경, 2020.11.3.]

[조변변경, 2020.11.3.]

제38조(대출조건) ①공제계약대출의 대출기간(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대출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개정 2020.11.3.>

②대출기간 중 계약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대출기간 중 계약자는 제35조(대출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8.7.23.>

④기존 대출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자가 기존 일반대출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규대출로 처리합니다.<신설 2020.11.3.>

⑥ 삭 제 <2015.4.1.>

⑥계약자가 일반대출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또는 계약자가 기존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등은 각각 별도 대출로 처리합니다.<신설 2020.11.3.><개정 2023.9.26.>

⑦제8조제2항의 계약해지 또는 제41조제1항제3호내지제6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7.25.>[항변변경 2020.11.3.]

⑧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은 최초 대출기간 경과이후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의 대출조건이 적용됩니다.<신설 2020.11.3.><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15.4.1.][조변변경 2020.11.3.]

제39조(대출이자) ①공제계약 일반대출의 이자는 「기준이율+연3%」 범위 내에서 정

하여 공제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개정 2020.11.3.>

②공제계약 일반대출이외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등의 이율은 별도 중앙회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신설 2020.11.3.><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15.4.1.][조변변경 2020.11.3.]

제40조(변제충당순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납이자, 대출금, 및 기타 비용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개정 2015.4.1.>[조변변경 2020.11.3.]

제41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미납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개정 2021.6.29>

1. 제8조(계약해지)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2. 제1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8.5.19.>

3.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제8조 제2항제1호의 사유(24개월 이상 부금미납)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2항 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때 <개정 2015.4.1., 2021.6.29., 2025.2.28.>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5.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

6. 제7조에 따라 계약의 무효가 된 때 <신설 2017.7.25.>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7.25.>

[조변변경 2020.11.3.]

제42조(대출제도 변경) 제34조내지제40조의 공제계약대출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공제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신설

2015.1.1.>[조변변경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변변경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중앙회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조변변경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43조 삭제 <2011.2.16.>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조변변경 2011.2.16.,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7관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제46조(무등록 소상공인의 정의)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7.7.25.>
[본조신설 2010.9.30.][조변변경 2011.2.16.,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47조(공제 가입) “무등록 소상공인”은 최근 3개월내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로 사업사실 확인을 거쳐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10.1.>
[본조신설 2010.9.30.][조변변경 2011.2.16., 2017.7.25.][조변변경 2020.11.3.]

제48조(폐업 등 적용 배제) ①공제에 가입한 “무등록 소상공인”이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약관 내용중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4.10.1.>
②제1항에 따라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8조(계약해지)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제13조(부금의 통산), 제17조(공제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동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2란중 “폐업·사망공제금”은 “사망공제금”으로 적용하고, 제3란 중 “노령·퇴임,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과산공제금”은 “노령·퇴임, 질병부상, 희생과산공제금”으로 적용합니다. <개정 2024.10.1.>
[본조신설 2010.9.30.][조변변경 2011.2.16., 2017.7.25.][조변변경 2020.11.3.]

부 칙 <2018.7.2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부금납부의 중지예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 이후에 납부중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8.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정상계약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신설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전의 부금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3조(부금납부의 중지예 관한 적용례) 제12조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4조(해약환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별표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는 2021년 8월 1일 계약자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10.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개정 2008.1.9., 2008.5.19., 2008.12.15., 2016. 3. 14., 2024. 5.9.>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제 1 란 (부금납부월수)	제 2 란 (폐업·사망공제금) (동호 진단 관련)	제 3 란 (노령·퇴임,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과산 공제금) (동호 후단 관련)																								
공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납 부 부 금	납 부 부 금																								
공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차등지급이율표」 상의 적용이율로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 차등지급 이율표 <table><tr><th>번호</th><th>적용(부리)기간</th><th>적용이율</th></tr><tr><td>1.</td><td>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td><td>기준이율 연 0.3%</td></tr><tr><td>2.</td><td>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25%</td></tr><tr><td>3.</td><td>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2%</td></tr><tr><td>4.</td><td>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15%</td></tr><tr><td>5.</td><td>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1%</td></tr><tr><td>6.</td><td>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05%</td></tr><tr><td>7.</td><td>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td><td>기준이율</td></tr></table>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주) 1. 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에 중앙회가 정하며 (매 3개월간 적용되나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
이율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기간 중 변경가능), 「기준이율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
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공제금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한도(최저보증이율)는 가입 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5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1.0%로 합니다. (제25조제3항 관련)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표 2> <개정 2008.1.9., 2008.5.19., 2008.12.15.>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24조제3항제1호 관련)

부금납부월수	간주해약환급금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회 이상 36회 이하인 경우	납 부 부 금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37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용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하 이 표에서 “부리 공백기간”이라 합니다)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주) 1. 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3개월간 적용되나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기간 중 변경가능), 「기준이율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환급금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한도(최저보증이율)는 <별표 1>의 기재와 같습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표 3> <개정 2008.5.19., 2008.12.15., 2015. 1. 1., 2016. 8. 1, 2017.12.12., 2021. 6. 31, (2021.8.1.시행)>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부 금 납 부 월 수	일반해약환급금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회 이상 3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9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 6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61회 이상 72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용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4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3회 이상 12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용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21회 이상 18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용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환급금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81회 이상 24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8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241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95%

- 주) 1. 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3개월간 적용되나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기간 중 변경가능), 「기준이율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환급금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한도(최저보증이율)는 <별표 1>의 기재와 같습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표 4> <개정 2007.10.10., 2008.1.9., 2008.5.19., 2008.12.15., 2017.7.25>

“기타 지급이율표”

구분	적용(부리)대상	적용기간		적용이율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제1조제5항 관련)	청약금	청약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 (제2조제2항 관련)	청약금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후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		기준이율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제6조제3항, 제7조 단서조항 관련)	부금납부액	부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간주해약사유 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계속 부금을 납부한 경우 (제16조 관련)	사후부금액	사후부금액을 받은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준이율의 1/4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0조제3항 관련)	해약환급금	해약일의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준이율의 1/4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제3항 관련)	공제금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준이율의 1/4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31조제5항 관련)	분할공제금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준이율의 1/4

구 분	적용(부리)대상	적용기간	적용이율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31조제5항 관련)	분할공제금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지급 월이 미 도래한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관련)	잔여 분할공제금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의 1/2
		일괄지급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 주) 1. 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3개월간 적용되나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 이율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기간 중 변경가능), 「소상공인공제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지급이자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한도(최저보증이율)는 <별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4.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합니다.
5. 계약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5> <삭 제 2015.4.1.>